

보 건 복 지 부

시 정 요 구

제 목 사회복지법인·시설 비지정후원금 집행 부적정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강원도 본청, 원주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양구군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7 및 보건복지부 지침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후원자가 그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 등 업무추진비는 15%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및 기타, 운영충당 적립금, 환경개선 준비금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설비의 자산취득비는 토지, 건물을 제외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 구입만 사용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기간 동안 강원도 관내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비지정후원금 집행현황을 확인한 결과, ‘○○○○○작업장’ 등 61개 법인·시설에서는 비지정후원금 집행액의 50%를 초과하여 간접비로 사용하였으며, ‘○○○○○’ 등 4개 시설에서는 비지정후원금 집행액의 15%를 초과하여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다.

또한, “○○○○”등 17개 시설에서는 비지정후원금 사용불가 항목인 전출금 등에 사용하였으며, “○○○○○○○센터”등 9개 시설에서는 토지·건물 구입·임대 비용으로 비지정후원금의 자산취득비를 사용하였다.

조치할 사항 강원도지사, 원주시장, 삼척시장, 횡성군수, 영월군수, 평창군수, 정선군수, 철원군수, 화천군수, 양구군수, 고성군수, 양양군수는

비지정후원금 집행기준을 위반한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하시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